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 24

다. 상 정 일 자 : 2003. 1. 24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허길중

나. 개정사유

- 화순군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 및 등록장애인 및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확대를 위한 지방세(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안)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화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화순군세감면조례(안 제2조2항 및 제3조1항)중 단서 “다만 보철용 또는 생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삭제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안 제5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18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로 되어있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11조)중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로 되어 있던 것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1호”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현범)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변경 및 등록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확대를 위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어 개정하는 것임. 별다른 의견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6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안)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 감면) ①</p> <p><삭제></p> <p>1. ~ 4.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안)
<p>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생략)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p>	<p>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p> <p>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현행과 같음)②---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③(생략)</p>	<p>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p> <p>②~③(현행과 같음)</p>

